

2015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사항 안내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작년 대폭 개정에 따라 올해는 굵직한 개정사항이 없어 작년같은 큰 혼란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올해 개정사항 중 근로자들에게 직접 적용될만한 몇가지 사항이 있어 소개해드리오니 절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은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입니다. 기존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에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50만 원)으로 완화되어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근로소득외의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기존과 같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이라는 것은 주의하셔야 할 포인트입니다.

둘째, '2015년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입니다.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하여,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셋째,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근로자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적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 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 원 추가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적용 사례》

납입액		공제 대상	세액공제액
연금저축	퇴직연금		
0원	9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15% 또는 12%
2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15% 또는 12%
500만 원	2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15% 또는 12%
900만 원	0원	400만 원	400만 원×15% 또는 12%

※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

이외에도 원천징수세액 선택제도 도입, 추가납부 세금 분납제도 도입 등 몇가지 이슈가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등을 이용하시어 해당부분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향후 연말정산 일정으로는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고 제출하신 서류를 바탕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는 2월 급여시 지급 또는 차감됩니다.

아는 만큼 돈이 되는 연말정산! 개정사항을 숙지하시고 필요서류를 잘 챙기셔서 절세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계약보증 책임과 계약보증금의 성질

1. 보증책임 및 지급한도 (계약보증약관 제1조)

가.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외화보증금액이 병기된 경우에는 원화보증금액을 적용합니다. 이하 “보증금액”이라 합니다)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

나. 보증채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별도로 정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관
-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④ 민법 또는 상법 이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의 인가·승인·관리·감독 등을 받는 기관

2.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계약보증약관 제2조)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한 때
- 2)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
- 3) 보증서를 보증목적(계약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4) 보증서수령일 이전에 이미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선금(계약금, 착수금 등) 반환채무
- 6) 보증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지체상금 약정액 및 보증채권자의 대지급금(채무자와 계약한 노무자에 대한 노임, 자재업자의 자재대금, 장비업자에 대한 장비대금 등) 반환채무
- 7) 보증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지급한 초과 기성금(공사 공정률 대비 초과 지급된 기성금)반환 채무

3. 주계약의 해지 (계약보증약관 제5조)

- 1) 보증채권자가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미리 조합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간 내 또는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는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합니다.
- 3) 보증채권자가 2)의 기간 내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1. 나 ③의 기관일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4.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계약보증약관 제3조)

- 1)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지체없이 조합에 알리고, 보증금 청구 시에는 보증금 청구문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이 요청한 자료와 소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
 - ① 보증서 사본
 - ② 계약관련 서류(내역서 포함)
 - ③ 기성관련 서류(기성금 지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④ 계약해지 및 타절정산 관련 서류
 - ⑤ 실제 손해액 입증 서류
 - ⑥ 기타 조합이 보상심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서류
- 2)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의한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게을리 함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의무(계약보증약관 제4조)

- 1)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성금 또는 준공금의 지급유예조치·기성부분의 훼손예방 등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 2) 보증채권자가 제1항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조합이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3) 주계약의 이행중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채권자는 바로 그 내용을 조합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① 보증채권자를 제3채무자로한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된 경우



- ② 채무자나 채권양수인으로부터 채권양도·양수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 ③ 채무자가 노임, 자재, 장비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체불된 금액을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기성금으로 직접 지급할 경우

6. 보증계약의 효력상실 (계약보증약관 제6조)

- 1) 이 보증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부터 이 보증계약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보증채권자가 변경되었을 때
 - ②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

7. 시공상황조사 및 보증채무확인 조사 (계약보증약관 제7조)

- 1) 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현장을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직접 조사하거나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자에게 조합이사장 또는 대행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증표를 휴대하게 합니다.
- 2) 조합은 시공상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증채권자, 채무자 및 감리자에게 계약 변경내용·시공방법·착공 및 공정계획·공사진척상황·기성금지급·자재 및 노임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3) 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4) 보증채권자는 전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8. 보증금의 지급시기 (계약보증약관 제8조)

- 1) 조합은 보증채권자의 보증금 청구문서(심사자료 포함)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의 심사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제출한 심사자료에 대해 정당한 이의가 있어 소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 및 소명에 소요된 일수는 제외하기로 합니다.
- 2) 조합은 보증채권자의 청구금액 중 심사가 완료된 부분은 보증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
책임과 계약
보증금의 성질

9. 계약보증금의 성질

- 위약금 :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민법 제398조제4항)
 - 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계약금
 - 해약추정금 :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제권을 보류하기 위해 수수된 것임 (제565조, 제567조)
 - 손해배상예정액의 예정 내지 위약금
계약금 수수시 “위약시는 교부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교부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한다”는 특약시는 해약금성질을 갖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갖고 있음(대법원 71.5.24, 71다473)
 - 계약보증금을 위약별로 보느냐 아니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느냐의 실익은
 - 위약별로 보는 경우는 그 금액이 실제 손해 발생액보다 과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감액을 청구할 수 없으나
 -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는 일정요건 하에 법원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데 있음
 - 귀책사유 및 손해 미발생의 증명과 배상 예정액의 관계
 - 다수설은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사실, 손해가 전혀 없다는 사실 또는 실제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도 적다는 것 등을 입증하더라도 책임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하고
 - 채권자도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크다는 것을 입증하여도 증액을 청구하지 못함. 다만, 당사자가 불가항력, 무손해의 항변권, 특별손해의 배상 등에 관하여 특약을 한 때에는 그에 의함
- 〈예정배상액의 증감〉
- 과다한 경우 : 법원은 적당히 감액 할 수 있음(제398조제2항)
- 과소한 경우 : 증액하지 못함
- 과실상계
 - 판례는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고 하나(대법원 72.3.3.1, 27다108), 통설은 채권자가 자기책임을 채무자에게 전가할 수 없고 예정액의 감액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이를 긍정함